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님!

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구로구 제1선거구,

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 서상열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「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10조에 따르면, 일정 기준을 두고

체육시설 개인연습 사용료와 생활체육교실프로그램 수강료를
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그런데 체육시설 개인연습사용료 감면 대상에는

어린이, 청년, 노약자가 포함되어 있지만

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대상에는
포함되어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왔습니다.

-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,
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기준에
‘18세 이하인자’와 ‘65세 이상인자’를 추가하여
어린이, 청년, 노약자 등의
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
체육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.
- 또한, ‘다둥이 행복카드’를 소지한 다자녀 가족도
체육시설 개인연습사용료와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
감면 혜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
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
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